

「2023년 김해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」 기간제근로자 및 도급조사원 모집 공고

김해시 스마트도시담당관에서는 「2023년 일자리종합실태조사」 기간제 근로자 및 도급조사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.

2023년 7월 일
김 해 시 장

1. 모집인원 및 기간

업무 구분	계약 방법	모집 인원	업무기간	보 수 (세금공제 전)	비고
조사 관리자	근로 계약	3명	- 교육: '23. 8. 11. - 업무: '23. 8. 16. ~ 9. 8.	79,840원/1일 기준	주휴일수 미포함
조사원	도급 계약	15명	- 교육: '23. 8. 11. - 업무: '23. 8. 17 ~ 9. 1. 기간 중 16일	76,960원/1일 기준	
입력 내검원	근로 계약	3명	- 업무: '23. 9. 4 ~ 9. 8.	76,960원/1일 기준	주휴일수 미포함

※ 최종합격자 중 각종 통계조사 경험 등을 감안하여 조사관리자, 조사원을 배정하며, 입력내검원은 조사관리자 연장 운용

※ 모집기간은 업무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2. 주요 수행 업무

모집 구분	주요 수행 업무
조사관리자	- 조사원의 현장조사 지도 및 점검 - 조사원의 진척률 파악 및 응답불응 사업체 설득 - 조사표 입력, 내용검토, 착오조사표 수정·보완, 조사표 편철·인계 등 - 기타 조사 관련 준비 및 취합 업무 등
조사원	- 조사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 및 작성내용 검토 - 착오조사표 재확인 및 수정보완 등
입력내검원	- 내검 완료 조사표 입력 및 정리, 전산오류 발생 조사표 재확인

3. 응시자격 요건

가. 19세 이상(2004년 7월 20일 이전 출생자)이며 책임감이 있는 김해시 거주자

※이중 취업자 제한 : 적발 시 모집 취소,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모집 제한

나. 조사기간 중 조사에 전념할 수 있는 자

다. **조사관리자** : 국가통계 및 경남·김해 지역통계(광업·제조업조사, 사업체조사 등) 관리자, 조사원, 입력내검원 등 **경력이 있는 자**

라. 우대조건 (관련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, 가점 부여)

○ 과거 통계조사(광업·제조업조사, 사업체조사, 경제총조사, 일자리종합실태 조사 등 사업체단위 및 그 외 통계조사)경험자 (2018년 이후)

○ 통계조사에 기여하여 통계청장 및 김해시장상 등 포상을 받은 자

○ 자가 차량 운전자, 전산자격증 소지자

○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률」에 따른 장애인

○ 저소득층, 다자녀보육가구, 북한이탈주민
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및 「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대상자(조사원만 해당)

※ 저소득층 범위 :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2조 제2호·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와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 가족

※ 다자녀보육가구 : 20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보육하는 가구

※ 북한이탈주민 :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, 직계가족, 배우자,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(『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』 제2조 제1호)

마. 심사기준

○ 통계조사 경력 유무, 통계포상 유무, 자가 차량 운행 여부, 전산자격증 유무, 통계조사 업무 적합도·자질, 직장 경험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(통계조사 무경력자 10% 채용 예정)

4. 신청서 접수

가. 접수기간 : 2023. 8. 1.(화) 09:00 ~ 8. 3.(목) 18:00 (3일간)

나. 접 수 처 : 김해시청 스마트도시담당관 데이터융합팀(본관4층)

다. 접수방법 : 본인 방문 접수

라. 제출서류 : 시 홈페이지 다운로드 또는 접수처에서 교부 작성

○ 조사요원 모집신청서,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각 1부

○ 응시제한확인동의서 1부

○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(현재 가입상황 표기, 1개월 이내 발급, 접수 당일 제출)

【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방법】

<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>

-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www.nhis.or.kr)에 접속 ⇨ 로그인 ⇨ 메인화면 '자격득실확인서 발급'
⇨ '직장가입' 사항으로 발급
-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유선(1577-1000) 팩스 발급
- ③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(행복민원청사 지하1층)
 - 장애인 증명 서류 1부 (해당자에 한함) ⇒ 장애인증은 해당 안 됨
 - 저소득층, 다자녀보육가구 증명 서류 1부 (해당자에 한함)
 -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.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자 증명서류 1부(해당자에 한함)
 - 전산자격증 증명서, 통계조사 경력증명서 1부 (해당자에 한함)

5. 모집방법 및 일정

가. 모집방법 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평가

나. 모집공고 : 2023. 7. 20.(목) ~ 8. 3.(목)

다. 신청서접수 : 2023. 8. 1.(화) ~ 8. 3.(목)

라. 합격자 발표

- 일자 : 2023. 8. 10.(목) 15:00 이후
- 방법 : 김해시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 문자 통보

6. 응시제한

- 채용예정일(2023.8.16.) 현재 김해시와 근로계약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(2023.2.16. 이전 퇴직자 응시 가능)
(단, 다음 3가지의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①이전 근로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, ②이번 채용분야와 부서 및 업무가 다른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를 연속 3회(3개월분)이상 수령한 경우 , ③채용예정일 전 6개월 내 채용된 적이 있으나 직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)
- 조사 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장애(청각·간질·정신질환 등)를 가진 자
 - 채용분야와 관련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장애는 응시 가능

7. 유의사항

- 가. 응시원서 등에 거짓 기재 또는 기재착오,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
- 나. **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한 경우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 (중도포기 시 중도포기 확인서 작성 필수)**
- 다. **겸업 또는 이중취업 사실을 숨기고 업무에 참여한 경우 계약 해지하며, 보수 감액 및 향후 2년간 모집을 제한함**
- 라. 이 시험에 의하여 채용되는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고용관계가 소멸하며, 공무원 또는 정규직 전환 등의 신분보장을 하지 않습니다.
- 마.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응시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)는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」에 따라 반환하며, 반환청구기간은 2023.8.3.~2023.9.3.(약1개월)까지입니다. (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작성하여 제출)
- 바. 반환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 반환된 채용서류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파기됩니다.

7. 문의처 : 김해시청 스마트도시담당관 데이터융합팀 (☎055-330-3195)

2023. 7 . .

김 해 시 장

[붙임 1]

「2023년 김해시 일자리종합조사」 조사요원 모집신청서

성명			성별	○ 남 ○ 여	
			생년월일		
연락처	주소				
	휴대전화				
신청분야	채용구분	○ 조사관리자 ○ 조사원			
	지원	(1순위)	(2순위)	(3순위)	
	읍면동	※ 읍, 면 지역 1개 이상 필수 기입			
직업	○ 가정주부 ○ 통.리.반장 ○ 대학생 ○ 부녀회원 ○ 퇴직공무원 ○ 무직 ○ 기타()				
통계조사경험 (2018년 이후)	○ 광업·제조업조사, 사업체조사, 경제총조사 ()회 ○ 그 외 김해시 주관 통계조사 참여 횟수 ()회 ○ 동남지방통계청 등 타 공공기관 통계조사 참여횟수 ()회 ○ 해당 없음()				
건강보험	○ 지역가입자 ○ 직장가입자 ○ 피부양자 (직장보험가입자는 상실신고 이후 지원 가능)				
상해보험 가입 여부	○ 가입 ○ 미가입 ※ 조사원 의무가입 사항임				
통계 조사 포상	○ 총 ()회, 통계청장, 김해시장상 ○ 없음				
전산자격증 여부	○ 컴퓨터활용능력 ○ 워드프로세서 ○ 기타() ○ 해당없음				
조사시 이용교통수단	○ 자동차 ○ 도보 ○ 기타()				
지원 동기	○경제적 이유 ○여가활용 ○사회활동 참여 ○주위 권유 ○기타				
기타 (우대)	장애인	○ 대상	○ 비대상		
	저소득층	○ 대상	○ 비대상		
	다자녀보육	○ 대상	○ 비대상	※ 20세 미만 3자녀 이상 보육 여부	
	북한이탈주민	○ 대상	○ 비대상		
	국가유공자	○ 대상	○ 비대상		

- ※ 조사요원 채용 신청서 작성 시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세요.(허위 작성 시 미채용)
- ※ 조사원 채용확정시 상해보험 미가입자는 계약서 작성 시 상해보험에 가입해야 채용함
- ※ 관련 서류(전산자격증, 장애인, 저소득층, 다자녀보육, 북한이탈주민, 국가유공자, 타 공공기관 경력 등) 제출자에 한해 가점부여

위와 같이 「2023년 김해시 일자리종합실태조사」 조사요원을 신청합니다.

2023. . .

신청자 :

(서명 또는 인)

김해시장 귀하

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동의서

김해시장 귀하

본인은 귀 기관에 지원 및 근로/도급계약을 함에 있어 김해시청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15조 및 제22조,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3조에 따라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 하는 경우 개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귀 기관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개인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 목적

- 근로/도급계약 결정과 유지·관리 등의 인사업무, 4대 보험의 신고, 임금·퇴직 등의 산정과 지급, 경력/자격의 조회 및 채용이력관리, 신원조사 등과 관련된 업무
- 보험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 등

수집·이용할 개인(신용)정보의 내용

-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생년월일 등 고유식별정보, 주소, 전화번호, 계좌번호, e-mail, 연락처, 자격사항, 4대 보험 가입 및 상실이력 등

개인(신용)정보의 보유·이용 기간

-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계약의 종료시점까지(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 포함) 위 이용목적에 위하여 보유·이용되며, (계약 종료일) 이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사고 조사, 분쟁 해결, 민원 처리, 통계 자료 작성, 법령상 의무이행 및 기관의 리스크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 됨.
-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보존기간(3년)경과 후 파기

이에 대한 동의가 없을 경우 근로/도급계약 관계의 설정 또는 유지가 불가능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2023년 월 일

지원자: _____(인, 서명)

응시제한확인동의서

본인(_____)은/는 김해시 기간제근로자 채용전형에 응시함에 따라 채용공고문에 명기된 응시제한사유*를 면밀히 확인하고 이해하였으며 응시제한사유*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동의서를 작성합니다.

*응시제한사유

- 채용예정일 현재 김해시와 근로계약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(단, 다음 3가지의 경우에는 응시 가능함 ①이전 근로가 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경우, ②이번 채용분야와 부서 및 업무가 다른 근로 종료 후 실업급여를 연속 3회(3개월분)이상 수령한 경우, ③채용예정일 전 6개월 내 채용된 적이 있으나 직전 근로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)

최종합격 내정 시(근로계약 체결 전), 응시제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*를 아래의 방법*으로 제출할 것을 동의하고,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관련서류 확인 후 응시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취소 됨에 동의하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
*관련서류 및 제출방법 → “택1”, 제출방법 반드시 준수

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(콜센터 1577-1000 신청하여 반드시 담당자 팩스로 받음)
→ ‘직장가입사항’으로 발급
-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(근로복지공단 인터넷 발급하여 직접 제출)
→ ‘전체이력’ 발급

2023. . .

생년월일 :

응시자 본인 :

(서명 또는 인)

공정채용확인서

김해시는 불공정 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응시지원자 본인의 확인을 받고자 하오니, 사실 그대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본인과 친인척 관계(배우자 및 4촌 이내의 혈족과 인척)인 사람이 김해시 본청·직속 기관·사업소·출장소·읍면동·의회사무국에 직원(공무원·공무직·청경) 또는 시의원으로 재직(임) 하고 있다. (있다 / 없다) _ “있다”에 체크한 경우 아래 2·3·4항 모두 작성

2. 친인척(배우자, 4촌 이내 혈족과 인척) 관계 ※ 별지로도 작성 가능

본인과의 관계	친인척 직원 성명	부서명	직 급	비 고

3. 본인과 본인의 친인척은 이번 채용과정에서 “직접” 또는 “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”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? (있다 / 없다)

4. 재직(임)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거나 행사하였다고 (생각한다 / 생각하지 않는다)

- 위 기재사항은 모두 사실이며,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 건 채용에 대하여 본인 및 본인의 친인척의 채용비리(채용 개입 및 채용에 부당한 영향 등) 사항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확인합니다.
- 또한 이 확인서 작성 시에 인지하지 못한 친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, 조사 결과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위 본인 _____ (인 또는 서명) 생년월일 : _____

[붙임 5]

-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[별지 제3호서식]

채용서류 반환청구서

접수번호		접수일자
청구인	성명	수험번호
주소		
반환장소 (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)		
반환청구서류		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.

년 월 일

청구인

(서명 또는 인)

김해시장 귀하

공지사항
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,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.
-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.

